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학칙	문서번호	2-0-1		
		제정일	1992. 03. 01.		
		개정일	2022. 12. 01		
		페이지	1/24	관리 부서	교무처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대학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인간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고 국민보건 및 간호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이론을 연구 교수하고 간호기술을 연마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직 간호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비전을 실현하고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인 직업소양 함양, 간호 수행 역량 탁월성, 간호전문성 개발을 교육목표로 삼고자 한다.

제3조(명칭) 본 대학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라 한다.

제4조(위치) 본 대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호대로 38에 둔다.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① 본 대학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학 과	입 학 정 원		비 고
	주 간	계	
간 호 학 과	168명	168명	

제6조(계열구분) 대계열의 구성 소계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과학계열 : 간호계열

제7조(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 ① 본 대학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 또는 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계약학과 등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학생의 정원, 운영, 경비, 납입금, 수업운영, 설치·교육기간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8조(산학협력단 설치) ① 본 대학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산학협력단을 둔다.

- ② 산학협력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학칙			문서번호	2-0-1	
				제정일	1992. 03. 01.	
	개정일	2022. 12. 01				
	페이지	2/24	관리 부서	교무처		

제 2 장 직 제

제9조(교직원) ① 본 대학에 두는 교원은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 ② 총장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 ③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겸임교원, 초빙교원, 강사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겸임교원: 교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초빙교원: 교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
 3. 강사: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

제9조의2(강사) ① 학칙 제9조 3항에 따른 강사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시행일 2019.8.1.)

제10조(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은 교무(敎務)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 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
- ③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업무를 담당한다.
- 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11조(조직) ① 본 대학에는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산학협력처, 사무처를 두며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무처에는 교무팀, 입학관리팀, 전공심화지원팀을 둔다.
 2. 학생처에는 학생팀을 둔다.
 3. 기획처에는 기획홍보팀을 둔다.
 4. 산학협력처에는 산학협력팀을 둔다.
 5. 사무처에는 총무팀, 회계팀, 전산팀을 둔다.
- ② 각처에는 처장을 보하고,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학칙	문서번호	2-0-1		
		제정일	1992. 03. 01.		
		개정일	2022. 12. 01		
		페이지	3/24	관리 부서	교무처

제 3 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12조(수업연한) 본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며,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1년으로 한다.

제13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 4 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14조(학년도) 학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제15조(학기) 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1년 2학기로 나누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2.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3. 위의 1, 2호에 대해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주(14일)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절학기, 실습학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를 거쳐 매 학년도 2주이내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7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토요일, 일요일
2. 국정공휴일
3. 개교기념일(5월 28일)
4. 본 대학에서 정하는 휴업일

② 하계방학·동계방학 기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학칙	문서번호	2-0-1		
		제정일	1992. 03. 01.		
		개정일	2022. 12. 01		
		페이지	4/24	관리 부서	교무처

제18조(임시휴업) 총장은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 5 장 입 학

제19조(입학시기) 입학(재입학, 편입학 포함)을 허가하는 시기는 수업일수 1/4선 이내로 한다.

제20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20조의 1(차별금지) 개인의 신체나 신념, 인종, 장애 등을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교육기회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입학지원 절차) 입학지원 절차는 모집 시에 따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2조(입학전형) 입학전형은 매 학년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3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의 1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① 입학전형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 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5조(입학허가 및 등록) 입학은 입학절차를 통하여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학칙			문서번호	2-0-1		
				제정일	1992. 03. 01.		
	개정일	2022. 12. 01					
	페이지	5/24	관리 부서	교무처			

제26조(입학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자
2.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
3.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입학지원방법을 위반한 자
4. 기타 입학 모집요강 등에서 총장이 정한 입학 취소요건 해당 자

제27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을 때 선발한다.

- ③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재입학) ① 본 대학에 제적하였던 자로서 퇴학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처벌) 제1항에 의한 징계제적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②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교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입학정원과 재적생 대비 여석이 있을 때 허가할 수 있다.

제 6 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29조(휴학) ① 질병, 가정형편, 특별사유(임신·출산·육아)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다만, 질병이나 특별사유로 인한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휴학한 자는 학적을 보유하며, 학기시작 이전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할 수 있다.
- ③ 휴학은 1년 단위로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으나,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특별사유(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④ 성적취소로 인해 학기 재이수가 필요한 학생에 한해 총장의 허가를 얻어 6개월의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30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된 다음 학기 등록기간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 전에라도 휴학사유가 해소된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 ② 복학은 학기 개시 3주(21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 ③ 동일학기에 휴학원을 제출한 후 결석허용 한계일 이전에 휴학사유가 해소된 경우 이를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학칙	문서번호	2-0-1		
		제정일	1992. 03. 01.		
		개정일	2022. 12. 01		
		페이지	6/24	관리 부서	교무처

취소하고 복학할 수 있다.

제31조(자퇴) ①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 (이하“자퇴”라 한다)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자퇴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제32조(제적)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 처분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4주간(28일)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무계출 결석 4주년을 초과한 자
 3. 타교에 입학한 자 (이중학적을 가진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매학기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5.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6. 기타 관계규정 위반으로 총장이 제적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7 장 교 과 및 수 업

제33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공교과, 교직교과로 구분한다.
 ② 교육과정의 학점배점기준 및 전공교과의 시수비율기준 등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학점이수) ①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등은 1학기간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교과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② 학생은 매학기 13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3학점 이하를 이수할 수 있다.

제35조(학점인정) ① 국내·외의 2, 3년제 대학 및 대학교 졸업자로서 정원의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는 전적교에서 동일한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에 전적교 이수교양과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본 대학교와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교)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과 성적은 본 대학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h2>서울여자간호대학교 학칙</h2>	문서번호	2-0-1		
		제정일	1992. 03. 01.		
		개정일	2022. 12. 01		
		페이지	7/24	관리 부서	교무처

③ 학점 및 성적인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과정표 및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금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의 범위는 13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수강신청하지 아니하고 이수한 교과목은 그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재수강할 수 있으며 신청대상은 D+이하 학점을 취득한 교과가 있는 자에 한한다.

제37조(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계절수업, 임상실습수업, 방송·통신수업등의 방법에 의하며, 세부 운영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수업은 9:00부터 22:00까지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38조(계절수업) ① 총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계 또는 동계방학기간 중에 계절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계절수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집중수업) ① 학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학기, 실습학기 등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교수시간) ①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학기당 15주) 이상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9시간으로 한다. 다만, 보직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비정년전임교원 및 강사의 책임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상담, 학생지도 등은 교수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1조(출석의무) ① 학생은 수강신청한 전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과목당 결석일수가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경우 그 교과목의 학기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미취득으로 처리한다.

③ 출석부는 당해 학기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h2>서울여자간호대학교 학칙</h2>	문서번호	2-0-1		
		제정일	1992. 03. 01.		
		개정일	2022. 12. 01		
		페이지	8/24	관리 부서	교무처

④ 매 학기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일 전까지의 출석을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42조(출석인정) ① 질병, 상고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실습 및 실기에 관한 출석인정은 학칙시행세칙에 의한다.

③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의2(타교생의 수학) 국내·외의 대학에서 재학 중인 학생이 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수학기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 등에 의한다.

제 8 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43조(시험)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학기중에 중간시험을 행할 수 있다.

② 시험은 주·객관식 시험을 병용한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에 따라 실기, 실습, 과제물 작성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각 교과목 총 수업 시간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학기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제44조(추가시험)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할 때에는 시험 개시 전에 그 사유를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된 자에 대하여는 과목 담당교수가 추가시험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시험 성적은 B⁺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③ 추가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학습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하며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② 교과목 성적이 60점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는 교과목 등에 있어서는 P를 급제로 한다. 이때, 취득학점은 인정하고 평점평균 산출에서는 제외한다.

	<h2>서울여자간호대학교 학칙</h2>	문서번호	2-0-1		
		제정일	1992. 03. 01.		
		개정일	2022. 12. 01		
		페이지	9/24	관리 부서	교무처

- ④ 수강승인을 받고도 수강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은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 ⑤ 성적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한다.
- ⑥ 재시험 성적은 C+, 재수강 및 계절학기 성적은 C+까지 인정할 수 있다

[9단계 평점방법]

등 급	배 점	평 점	비 고
A ⁺	95 ~ 100	4.5	
A ⁰	90 ~ 94	4.0	
B ⁺	85 ~ 89	3.5	
B ⁰	80 ~ 84	3.0	
C ⁺	75 ~ 79	2.5	
C ⁰	70 ~ 74	2.0	
D ⁺	65 ~ 69	1.5	
D ⁰	60 ~ 64	1.0	
F	59 이하	미취득	
P		불 계	

제46조(성적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취소할 수 있다.

1.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2. 중복 신청하여 취득한 성적
3. 출석 미달 과목의 성적
4.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성적
5.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의 성적

제47조(학사경고) 성적평가 결과 매 학기 평점평균이 1.7미만이거나 미취득과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제48조(유급) ① 매 학년말 성적 평점이 1.5학점 이하이거나 미 취득과목이 있는 자는 유급 조치할 수 있다.

- ② 유급시 유급학년도의 취득한 점수는 무효처리 한다.
- ③ 유급에 관한 세부 시행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h2>서울여자간호대학교 학칙</h2>	문서번호	2-0-1		
		제정일	1992. 03. 01.		
		개정일	2022. 12. 01		
		페이지	10/24	관리 부서	교무처

제49조 삭 제

제50조(졸업) ① 교육과정에 의하여 전 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에서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
과목의 이수 및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에게는 졸업자격을 부여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은 120학점 이상으로 한다. 전공심화과정은 20학점 이상
으로 한다.

제51조(졸업인정과 학위수여) 본 대학에서 졸업이 인정된 자는 별지 서식 제1호의 학위
증서를 수여한다.

제52조(수료)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에게는 별지서
식 제2호의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
은 다음과 같다

1. 1학년수료 : 2학기 30학점 이상 이수자
2. 2학년수료 : 4학기 60학점 이상 이수자
3. 3학년수료 : 6학기 90학점 이상 이수자
4. 4학년 수료 : 8학기 120학점 이상 이수자

제 9 장 평 생 교 육

제53조 삭 제

제54조(비정규 특별과정 운영) ① 본 대학에서는 1년 이내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 운
영 할 수 있다.

② 비정규 특별과정은 본 대학에서 설치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실시한다.

③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55조 삭 제

제56조 삭 제

제57조 삭 제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학칙	문서번호	2-0-1		
		제정일	1992. 03. 01.		
		개정일	2022. 12. 01		
		페이지	11/24	관리 부서	교무처

제 10 장 학 생 활 동

제58조(학생회) ① 학생은 본 대학의 전통과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탐구와 창조적, 비판적 지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9조 삭 제

제60조(학생활동의 제한) ① 대학은 학생회,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자치활동(이하 “자치활동”이라 한다)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단, 자치활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그 자치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반사회적 활동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2. 폭력행위나 대학의 시설 및 비품 등을 훼손하는 경우
3. 수업 및 연구 활동,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수행 등을 방해하는 경우
4. 학칙 등 제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경우

제61조 삭 제

제62조(학생단체의 조직)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단체운영 및 활동 규정에 의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3조(학생지도) ① 총장은 매 학년도 학생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 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4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중 총장은 그 일부를 학생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h2 style="margin: 0;">서울여자간호대학교 학칙</h2>	문서번호	2-0-1		
		제정일	1992. 03. 01.		
		개정일	2022. 12. 01		
		페이지	12/24	관리 부서	교무처

1. 교내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등

제65조(간행물 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총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6조(처벌) ① 본 장의 제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총장이 직접 징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징계 제적된 자 (타교에서 제1항에 의거하여 징계 제적된 자 포함)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다.

제66조 2(복지) 학생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관련 보험을 가입한다.

제66조의 3(장애학생의 지원) ① 본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수업, 학내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1 장 규율 및 상벌

제67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 자질을 함양토록 한다.

제68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9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본 대학의 학칙을 위반한 자
2.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가망이 없는 자
3.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및 퇴학으로 구

	<h2>서울여자간호대학교 학칙</h2>	문서번호	2-0-1		
		제정일	1992. 03. 01.		
		개정일	2022. 12. 01		
		페이지	13/24	관리 부서	교무처

분하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모든 징계대상자는 징계 심의 시 회의에 출두하여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다.

④ 징계절차 등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 상벌에 관한 세부규정으로 정한다.

제69조의2(성희롱·성폭력의 예방 및 조치)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본 대학의 구성원을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조직을 두고 이에 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2 장 등 록 금

제70조(등록금) ①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을 포함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1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본 대학의 등록금 책정 및 심의 등을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정수는 10인으로 하고 위원 단위별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위원 : 1명
2. 교직원위원 : 3명
3. 학생위원 : 4명
4. 전문가위원 : 1명
5. 동문위원 : 1명

③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위촉은 다음 각호의 추천을 고려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1. 법인위원 : 법인에서 추천한다.
2. 교직원위원 : 교무위원회에서 추천한다.
3. 학생위원 : 총학생회에서 추천한다.
4. 전문가위원 : 교무위원회에서 추천한다.
5. 동문위원 : 동문회에서 추천한다.

④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이 밖의 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72조(등록금의 면제·감액) ①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액하여야 한다.

	<h2>서울여자간호대학교 학칙</h2>	문서번호	2-0-1		
		제정일	1992. 03. 01.		
		개정일	2022. 12. 01		
		페이지	14/24	관리 부서	교무처

②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에 대하여 납입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제73조(등록금 반환) ① 이미 납입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할 수 없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5.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이월할 수 있다.

[등록금의 반환기준]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부터	반환하지 아니함

제 13 장 장 학 금

제74조(장학금) ①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거나 대학발전에 공이 있는 자, 대학의 명예를 선양한 자, 간호능력 향상이 탁월한 자 및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장학생이 휴학, 제적, 자퇴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h2>서울여자간호대학교 학칙</h2>	문서번호	2-0-1		
		제정일	1992. 03. 01.		
		개정일	2022. 12. 01		
		페이지	15/24	관리 부서	교무처

③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정하기 위하여 장학심의위원회 및 장학사정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4 장 교수회 및 제 위원회

제75조(구성) ① 본 대학에는 교수회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총장이 필요한 경우 보직 처장 및 정교수 이상으로 교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결정되는 사안은 전체 교수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76조(소집 및 심의) ①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의장 부재시는 그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②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3.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
4. 시험 및 성적사정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장학금지급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7 조(교무위원회) ① 총장의 직무에 응하여 본 대학의 기본적인 정책사항을 종합심의회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 구성,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8조(제위원회) 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 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5 장 학칙 제 개정 절차

제79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학칙의 제·개정을 할 때에는 제·개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학칙	문서번호	2-0-1		
		제정일	1992. 03. 01.		
		개정일	2022. 12. 01		
		페이지	16/24	관리 부서	교무처

제80조(공고기간) 학칙의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한다.

제81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본 대학의 교직원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당해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2조(심의 및 공포) ①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제·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

제83조 삭제(2017.03.01.)

제 16 장 부속 및 부설기관

제84조 삭제

제85조(부속기관) ① 본 대학에는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을 둔다.

1. 도서관
2. 신문방송국
3. 지역간호사업소
4. 교수학습연구지원센터
5. 서울 Sim-TEC
6. 학생지도상담센터
7. 진로지원센터
8. 취·창업지원센터
9. 성과관리센터
10. 교양교육센터
11. 비교과지원센터
12. 원격교육지원센터

②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h2 style="margin: 0;">서울여자간호대학교 학칙</h2>	문서번호	2-0-1		
		제정일	1992. 03. 01.		
		개정일	2022. 12. 01		
		페이지	17/24	관리 부서	교무처

제85조의2(도서관 운영) 도서관의 예산, 조직,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 기준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발전계획의 수립,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이용,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6조(부설기관) ① 본 대학에는 학교 및 간호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설기관을 둔다.

1. 학교기업
2. 평생교육원
3. 국제교류센터

② 부설기관의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17 장 산 학 협 력 단

제87조(설립 및 운영)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본 대학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 정관에 의한다.

제 18 장 학 교 기 업

제88조(설립 및 운영)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학교기업을 둔다.

1. 간호과와 연계하여 노인간호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휴먼캐슬”

② 제1항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서울시 종로구 평창길 318

③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9조(학교기업의 지원)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지원은 사무처에서 담당한다.

제90조(현장실습학점의 인정) ①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을 실시한 학생에 대하여는 졸업소요학점의 4분의 1 범위내에서 소정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h2>서울여자간호대학교 학칙</h2>	문서번호	2-0-1		
		제정일	1992. 03. 01.		
		개정일	2022. 12. 01		
		페이지	18/24	관리 부서	교무처

제91조(학교기업 보상금 지급기준) ① 학교기업의 운영성과에 대한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시 순이익의 30% 범위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10%를 넘을 수 없다.
- ③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교직원 또는 학생이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 ⑤ 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기준의 세부적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9 장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제92조(설립 및 운영)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0 장 자 체 평 가

제93조(자체평가) ① 고등교육법 제11조 2에 의거하여 대학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대학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체점검, 평가하기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운영위원회를 둔다.
- ③ 자체평가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1 장 보 칙

제94조(학칙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간호전문대학 재학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서울여자간호대학교의 재학생으로 본다.

	<h2>서울여자간호대학교 학칙</h2>	문서번호	2-0-1		
		제정일	1992. 03. 01.		
		개정일	2022. 12. 01		
		페이지	19/24	관리 부서	교무처

②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 학위는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h2>서울여자간호대학교 학칙</h2>	문서번호	2-0-1		
		제정일	1992. 03. 01.		
		개정일	2022. 12. 01		
		페이지	20/24	관리 부서	교무처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간호과 학사학위(4년제)과정 설치대학 지정에 따라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재적생은 종전 규정에 의하고 201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간호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직제에 관한 사항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h2>서울여자간호대학교 학칙</h2>	문서번호	2-0-1		
		제정일	1992. 03. 01.		
		개정일	2022. 12. 01		
		페이지	21/24	관리 부서	교무처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졸업이수학점의 경과조치) 제50조 2항의 졸업학점에 대하여 2019학년도 3학년 이상 재학생부터 2020학년도 졸업대상자까지는 138학점으로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h2>서울여자간호대학교 학칙</h2>	문서번호	2-0-1		
		제정일	1992. 03. 01.		
		개정일	2022. 12. 01		
		페이지	22/24	관리 부서	교무처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학칙	문서번호	2-0-1		
		제정일	1992. 03. 01.		
		개정일	2022. 12. 01		
		페이지	23/24	관리 부서	교무처

[별지 제 1 호]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 간호학과 전 과정을 이수하고
간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 함.

년 월 일

서울여자간호대학교총장

학위등록번호: 서간0000(학)0000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학칙	문서번호	2-0-1		
		제정일	1992. 03. 01.		
		개정일	2022. 12. 01		
		페이지	24/24	관리 부서	교무처

[별지 제 2 호]

제 호

수료증서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 간호학과 소정의 0년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 함.

년 월 일

서울여자간호대학교총장